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

제정 : 2019. 09. 06.

담당 : 국제교류팀(950-5403)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입학 주무부서)
제5조(관리 주무부서)	제6조(관리 지원부서)	제7조(자료의 전산관리)	제8조(근거서류 확보)
제9조(근거자료의 전산 입력과 인계)	제10조(출결사항 관리)	제11조(학점이수 관리)	제12조(변동사항 관리)
제13조(총괄관리 담당자 통보)	제14조(표준입학허가서 등록)	제15조(학적관리)	제16조(변동신고)
제17조(현황 통보)	제18조(입국지도)	제19조(오리엔테이션 개최)	제20조(학생 상담)
제21조(자치활동 및 생활 지원)	제22조(기타보험)	제23조(위기관리)	제24조(기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에 의거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외국인 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유학생'과 '교환학생'을 통칭한다.
2. '유학생'은 학사, 석.박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3. '교환학생'은 본교와 해외 소재 대학교와의 교류에 의하여 본교 단기교육과정에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한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입학 주무부서) ① 외국인 학생의 입학 및 선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유학생 : 입학관리팀
2. 대학원 유학생 :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 국제교류팀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본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 주무부서) ①외국인 학생에 대해 원활한 관리를 위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에서 관리하며 외국인 학생의 본교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한다
2. 대학원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서 관리하며 외국인 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한다

제6조(관리 지원부서) 외국인 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팀 : 학부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장학, 수업 및 졸업 등 학사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2. 대학원 교학팀 : 대학원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의 장학, 입학, 수업, 졸업 등 학사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3. 취창업지원센터 : 외국인 학생의 진로, 취업, 창업 전반에 대한 관리 지원
4. 일립생활관 : 생활관 입주 외국인 학생의 생활관 배정 등 관리 지원

제7조(자료의 전산관리) ①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자료 및 학사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관리한다.

1.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자료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한다
2. 외국인 학생의 출결 및 학점이수, 성적 등의 사항은 본교 학사프로그램으로 전산 관리한다.

제8조(근거서류 확보) ①출입국 자료의 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뒤면)
2. 여권사본
3. 기타 출입국에 관한 서류

② 근거서류는 학위과정 입학을 위한 필수서류로 한다.

③ 근거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제9조(근거자료의 전산 입력과 인계) ① 외국인 학생 선발부서 담당자는 제8조 제1항의 근거서류를 취합한 후 지체 없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에게 근거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전 항의 근거자료를 제7조의 학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출결사항 관리) ①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제7조의 해당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과목별 출결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장기 결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②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출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상담하고, 외국인 학생의 소속 학과에 통보하여 지도를 요청한다.

제11조(학점이수 관리) 제5조의 외국인 학생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매년 2월과 8월 중에 학사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학점이수 및 성적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지도한다.

제12조(변동사항 관리) 제5조의 외국인 학생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외국인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메시지 등)하여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 관련 변동사항 여부를 파악한다.

제13조(총괄관리 담당자 통보) 제5조의 관리주관부서 담당자를 새로 지정한 경우 관리주관부서의 장은 담당 지정 후 7일 이내(최대 14일 이내)에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며,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소속 부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표준입학허가서 등록) 외국인 학생 선발부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표준입학허가서 작성, 등록하고 입학허가번호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학적관리) 제5조의 각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학생의 학점 및 성적사항 등의 학사정보를 매년 2월과 8월 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변동신고) ①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전 항 각 호의 변동사유 발생을 최초 확인 또는 승인하는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현황 통보)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학생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입국지도) ① 제4조의 각 입학주무부서 담당자는 입학 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를 학생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신편입 외국인 학생 현황을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증 발급을 위해 국내 사전 심사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서는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 받아 제5조의 각 관리 주무부서 담당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교부받고 이를 지체없이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오리엔테이션 개최) ① 제5조 각 관리주무부서는 매 학기 1회 이상 신입 외국인 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② 오리엔테이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2. 본교 학사 규정 및 관련 학칙

3. 기숙사 및 학생 생활 정보
4. 외국인 학생 보험, 위기관리 및 안전준수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학생 상담) ① 제5조 각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관리지원부서의 협조를 통해 소속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외국인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학업지도에 관하여서는 소속 학과 및 교수와의 상담을 지원하며, 본교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자치활동 및 생활 지원) ①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는 외국인 학생 자치 활동 및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지원한다.

② 유학생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제22조(기타보험) 외국인 학생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5조의 관리주무부서 담당자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위기관리) ① 위기의 상황에는 본교 안전관리 계획을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강제 출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